

원격훈련 학습평가 미응시 훈련생 관련 업무처리 방법

<기업훈련지원부, '22.8.31.>

□ 검토 배경

- 원격훈련 재응시 제한 요건 삭제('22.1, 고용부 고시 개정)에 따라 **인터넷원격훈련과 스마트훈련의 N차 평가* 가능**
 - * 훈련생이 평가에 응시하고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의 재평가
- 이에, 최초응시에서 불합격한 훈련생에 대해 훈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주일간 N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침 시행
- 단, 훈련생 본인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**최초평가 결시한 경우 훈련생 불이익 해소방안이 부족하여 추가 방침 마련 필요**

<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>

제11조(지원금 지급 기준 등) ① 이 규정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위한 훈련생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기업대학 훈련과정은 제7조에 따라 정해진 수료기준에 따른다.

2.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스마트훈련과정

가. 제6조제3호라목의 본문에 따른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이상일 것. 단, 평가는 **공단 분사무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.**

☞ '공단 지부지사에서는 동 지침(N차 평가 운영 기준)에 따라 인정 여부 판단'

□ 검토 방향

- **(N차 평가 대상) 최초 평가에 응시한 훈련생에 한정하여 N차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(원칙)**
- **(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) 본인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에 미응시한 훈련생은 소속기관 승인을 통해 N차 평가 진행 허용**
 - 훈련생의 불가피한 사유는 **기시행 기준***을 준용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
 - * 원격훈련 평가 재응시 제한 관리 개선(안) 보고(원격훈련부정감시및활성화TF팀-540, '16.10.7.)

□ 인터넷원격훈련 및 스마트훈련 N차 평가 세부 방침

- **(N차 평가 배경) 재평가 제한기능에 관한 원격훈련 인정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훈련생 평가 재응시가 가능해진 것으로,**
 - 모든 훈련과정이 필수적으로 N차 평가를 수행할 **의무는 없음**
 - ※ 관련: 기업훈련지원부-311('22.1.21.) "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고시 개정 및 원격훈련 적용지침 수정 알림"
- **(N차 평가 대상) ①훈련기간 중 평가에 응시하였으나, 평가 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, ②훈련기간 중 훈련생 본인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에 결시한 경우**

[훈련생의 평가 응시 상황에 따른 N차 평가 적용 기준]

최초응시	유형	응시결과	N차 평가
○	① 훈련기간 중 평가에 응시하였으나, 평가 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	불합격	가능
×	② 훈련기간 중 평가에 결시한 경우 (훈련생 본인 귀책 사유 有)	결시	불가
×	③ 훈련생 본인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에 결시한 경우	결시	소속기관 승인 후 N차 평가 가능

- **(N차 평가 실시방법) 콘텐츠 심사 때 승인받은 내용으로 평가 실시**
 - **(평가 기한) 훈련기간 중 1회 평가 후 훈련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주일간 N차 평가 허용**
 - * 평가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, 중간·최종 평가 등도 훈련기간 중 1회 평가 시행후 훈련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N차 평가 가능
 - **(수료보고) N차 평가가 끝난 뒤 훈련과정 수료보고를 진행하여야 N차 평가 결과 반영**
- **(불가피한 사유 판단) '훈련생 본인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'란,**
 - ① 특별히 훈련생의 고의나 부정 의심이 없고, ② 사전에 발생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우며, ③ 훈련생 귀책이 아닌 사유로서, ④ 일반적인 사회 통념 상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로 한정